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안면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검 토 보 고 서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조안면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

1. 제안경과

○ 본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어린이 아쿠아도서관 조성사업’은 물가상승과 경기도 투자심사에 따른 예비비 반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명·건축 규모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주요내용

1) 주요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명	· (가칭)어린아아쿠아도서관 건립	▶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 10,847백만원 - 특별조정교부금 7,000 - 시비 3,847 (2,215 미확보)	▶	**· 15,497백만원 - 특별조정교부금 7,000 - 기금 1,000 - 도비 1,600 - 시비 5,897 (4,365 미확보)**
사업기간	· 2016. 7. ~ 2026. 12.	▶	**· 2016. 7. ~ 2027. 6.**

○ 사업비 변경: **증 47억** (당초 108억 ⇒ 변경 155억)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공사비, 인테리어 설계, 감리비 등)

○ 세부 산출기초

총사업비	**건축공사비**	95억	**인테리어**	17억	**부대비,대행사업비** (GB, 농지보전부담금)	6.5억
155억	**설계용역비**	5억	**감리비**	8억	**토지매입비**	0.5억
	자산취득	5억	**예비비**	13억	**미식관광플랫폼** (콘텐츠운영 및 실시설계)	5억

2) 운영계획

○ 기구 및 조직: 1팀(조안공공도서관팀) 5명

○ 주요 공간배치

- 1층 : 열람실, 강연실, 기계실
- 2층 : 미식컨텐츠연구소(미식도서 전시 및 열람), 소모임실, 강의실

○ 주요 공간

구분	주요시설		활용방안(안)
	· 미식열람실 · 미식강연실 · 미식 체험 공간		**· 디지털 미식 체험** ICT 기술 연계 실감형 미식 콘텐츠 체험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실감체험)** 조안 특산물(딸기·연근 등) 성장 과정 VR/AR 체험 및 가상 재배 운영 **(미디어)** 미식 크리에이터(유투버 등) 양성 및 미디어 창작지원 **· 지역 정체성 기반 미식·인문 프로그램** **(인문)** 다산 정약용의 '다식(茶食) 인문학' 강연 및 저자 대담 **(교육)** 사계절 미식 독서강좌, 연령별 독서회, 꼬마 탐험대 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 **(협력)** 미식 동아리 지원, 학교 연계 '미식 라이브러리 투어' **(행사)** '북(Book) 케이터링' 전시, 가족 타깃 미식 예술 공연(뮤지컬 등)
	· 생태열람실 · 환경열람실	▶	
	· 소모임실 · 강의실		

※ 물의 정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예정

5.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6. 12. 16.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7. 7. 20.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
○ 2021. 4. 15. : 어린이・아쿠아 도서관 사업방침 수립
○ 2021. 0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준공
○ 2021. 12.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
○ 2022. 4.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관) 용역 착수
○ 2023. 6. : 건축설계용역 착수
○ 2025. 4. : 2026년도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선정 (기금 1,000백만원)
○ 2025. 06. : 위・수탁협약 체결(남양주도시공사)
○ 2025. 08.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7호)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5. 11. : 2026년 도서관건립지원 도비 선정(1,600백만원)
○ 2026. 2. :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변경 방침 보고
○ 2026. 03. : 경기도 투자심사, 기술자문위원회, 건축허가 완료
○ 2026. 5. : 대행사업비 2차 교부(2,000백만원),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
○ 2026. 6. :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대행사업비 3차 교부(2,600백만원)
○ 2026. 07. : 공사발주・계약 추진(도시공사)
○ 2026. 08. : 건축공사 계약(도시공사)
○ 2026. 09. : 2026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6. 10. : 공사착공
○ 2026. 11.~12. : 기초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 2027. 03.~10. : 공사재개 및 공사준공(예정)
○ 2028. 03. : 도서관 개관(예정)

6.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항공사진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관련부서 : 정약용도서관과

7.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2016.12월)에서 ‘조안면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으로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제283회 제2차 정례회(2021.12월)에서 ‘어린이·아쿠아 도서관 조성’으로 변경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과 건축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명을 ‘어린이·아쿠아도서관 조성’에서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건축 규모는 당초 연면적 2,000㎡, 지상 3층에서 연면적 1,909.58㎡, 지상 2층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총사업비는 당초 108억 4,700만 원에서 154억 9,700만 원으로 46억 5,000만 원(약 42.9%) 증액하는 내용임.

○ 본 사업은 2016년 최초 의결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된 만큼, 향후에는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번 변경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아울러, 공공도서관으로 조성 방향이 변경된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목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 취지에 따라 지역자원과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건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1 위치도 및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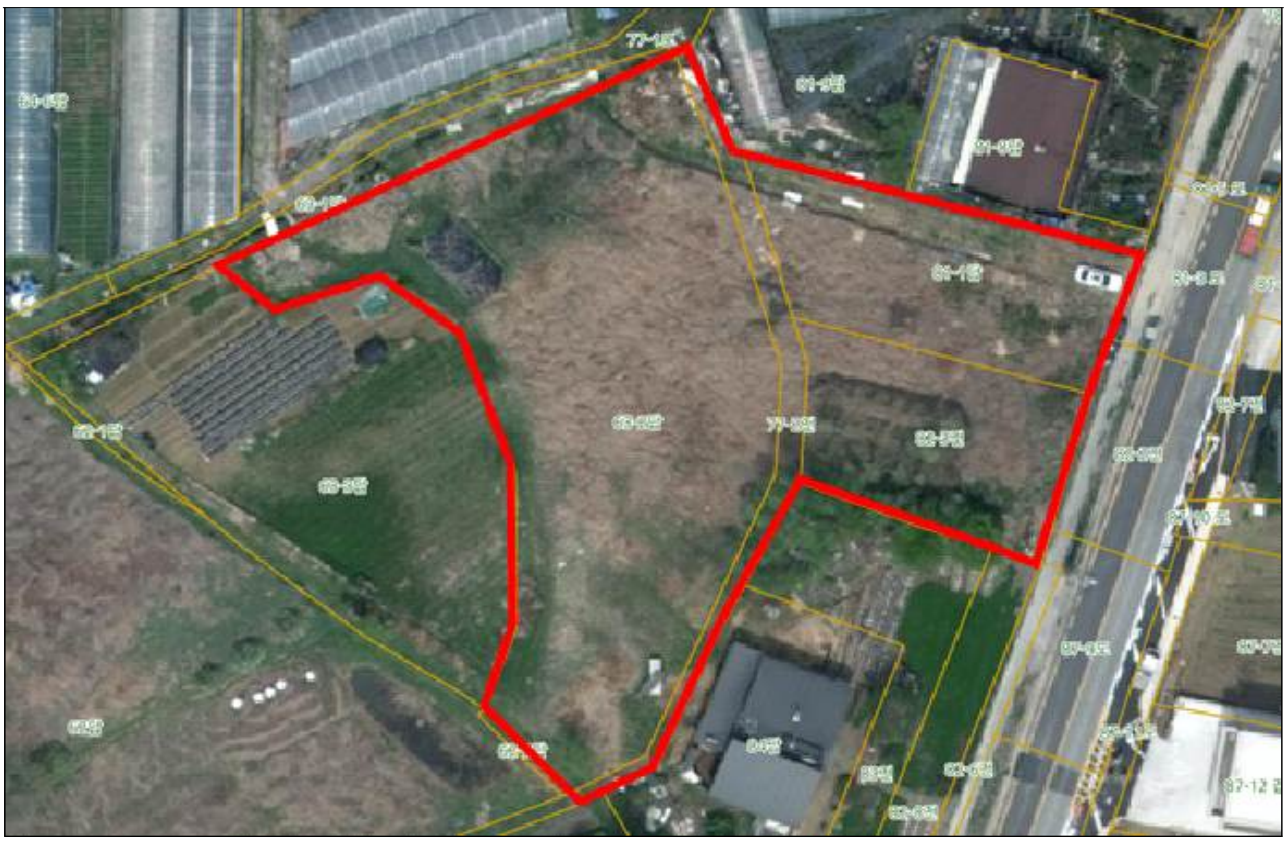

붙임2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9.19.>
4. <삭제 2022.9.19.>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 시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